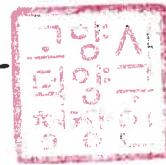


2019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 시 송 달 공 고

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 제36조(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2019년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를 시설물 소유자에게 송달(등기우편) 하였으나, 수취인부재, 수취인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「지방세기본법」 제33조(공시송달) 및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(송달)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
2019. 10. 24.

고양시 덕양구청장



1. 공고제목 : 2019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2. 관련법규 :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, 지방세기본법 제33조, 행정절차법 제14조
3.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: 붙임 참조(별첨)
4. 공시송달기간 : 2019. 10. 24. - 2019. 11. 7. (15일간)
5. 상기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고양시 덕양구청 교통행정과에서 고지서를 발급 받거나 가상계좌를 통해 관내 시중은행 및 전국 농협, 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, 공고기간 경과 후에는 가산금 부과 및 체납 시 재산을 압류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.
6. 기타 자세한 사항은 덕양구청 교통행정과(☎ 031-8075-5346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